

#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 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5.22., 개정 2019.09.16., 개정 2020.04.28. 개정 2022.04.12.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혜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기능 및 업무)

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.

-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의, 실명 공개 사과, 다양한 형태의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, 성폭력 및 성문제 관련 단체에서의 일정기간 봉사활동 등에 따라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하여야 한다.
- ②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와 동조하는 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상당한 피해를 받았음이 명백할 때는 그 동조자도 1호와 같이 처리할 수 있다.
- ③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신고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제2조의 업무 외에 상담실에서 의뢰된 사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,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, 중재 및 기타 조치(징계요구 등)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.
- ⑤ 위원회는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.

## 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으로 한다.<개정 2022.04.12.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.<개정 2019.09.16.>
- ③ 위원 중 학생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<개정 2019.09.16., 2020.04.28>

## 제4조 (임기)

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<개정 2020.04.28., 2022.04.12.>

제6조 (회의 및 의사의결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소위원회)

-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인권센터 담당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22.04.12.>

제9조 (회의록작성)

- ① 회의록은 위원장의 지시로 간사가 작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.

부 칙(2019.05.22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09.16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4.28)

제1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04.1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.